

보복범죄 경향 연구

A study on The tendency of insurance crime

강 맹 진
남부대학교

Kang maeng-jin
Nambu Univ.

요약

2014년 보험사기로 인한 금액이 무려 6000억 원에 이르고 범죄 혐의자도 8만 43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전년도 보다 9.4% 증가한 인원이다. 경기불황과 죄의식 결여 등으로 근래 들어 보험범죄는 갖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범죄발생 증가의 폭도 크고 그 수범도 잔인해지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보험범죄의 경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I. 서론

일반적으로 보험사고는 우연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우연적 사건이 아닌 인위성이 개입된 계약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 등은 보험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¹⁾. 보험범죄는 보험금을 타 내기 위하여 고의 또는 계획적으로 각종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계약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²⁾. 그런데 보험범죄는 경기불황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 경기가 불황일 경우에 특히 범죄발생이 증가하고 모방범죄도 기승을 부린다. 생명보험 분야나 손해보험 분야의 종사자들도 이와 같은 경향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범죄는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II. 보험범죄 유형과 경향

1. 보험범죄 유형

보험범죄는 보험사기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보험범죄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사기 계약, 고의 사고 유발, 사고 위장 등이 대표적이다.

1.1 사기 계약

보험계약 시 허위고지, 대리진단 등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적격자 보험가입, 불리한 사실 은폐 등 유형도 다양하다. 질병 진단을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거나 대리진단 등을 통하여, 통상적으로 여

러 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행위,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고일자 등을 조작하는 방법 등이 해당된다.

1.2 고의 사고

고의적으로 살인, 자해 등의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다.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뛰어내리거나, 진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는 행위 등을 자행한다. 또한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자신 등을 수익자로 한다. 고의로 제3자로 하여금 보험사고를 유발하도록 하고 사고발생 상황을 조작한다.

1.3 사고 위장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허위사망증명서 제출, 타인의 시신을 위장, 유사한 사람을 살해한 후 보험가입자가 사망한 것으로 조작하는 사례, 병·의원의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다른 사고로 인한 부상을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신고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특정 상품을 숨긴 뒤 도난으로 신고하는 행위, 파손된 차량을 교통사고로 파손된 것처럼 신고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³⁾.

2. 보험범죄 경향

보험범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보험범죄는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2.1 죄의식 결여

보험범죄의 피해자가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피해자 없는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저변에 퍼져 있다. 이제는 평범한 시민들조차 부상의 정도나 장애등급을 올리려 하거나 통원 치료를 하였음에도 입원 치료를 한 것으로 조작하는 행위, 치료기간 연장, 과잉진료 행위 등을 망설임 없이 하는 경우가 있다. 재물보험의 경우,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의도로 피해 규모를 과다 청구하는 행위 등이 발생한다(4).

2.2 강력범죄 자행

보험범죄는 대부분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5). 최근 발생한 보험범죄는 그 수법이 매우 잔인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남편에게 제조제를 먹여 서서히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하고 배우자와 자식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보험금 수령을 위해 가족 구성원 여러 명이 살해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가 있다.

2.3 조직화

보험범죄에서도 현대범죄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범죄자들이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가족이 보험범죄에 동원되기도 하는데 가족구성원 전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에 동원되거나 마을 구성원 대다수가 조직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2.4 범죄 대상 불문

보험금을 타기 위해 사람과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보상금 지급액이 고가인 동물에 대하여도 범죄행위의 대상으로 삼는다. 은퇴 직전의 경주용 말을 죽게하거나 부상을 입힌 후 보상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소의 다리를 묶고난 후 장치를 이용하여 줄을 잡아당겨 골절 등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가축재해 보험금을 타낸 경우도 있다.

Ⅲ. 대책

1. 제도적 보완

보험범죄로 적발되거나 기소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므로 형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범죄로 인한 이익금은 전액 환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높게 책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2. 공조 강화

사법기관과 보험업체간 협력 체계가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험범죄에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다.

보험범죄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과 보험업체의 조사 기능 간에 정보공유 등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3. 관리시스템 수립

과거 발생한 대형 사건의 보험금 수령 현황, 수령자 인적사항, 수령 지역, 복수 가입여부, 이외 특징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상이한 보험회사에서도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수사·조사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보험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독립된 조사기구의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홍보 강화

보험범죄의 발생 증가와 보험금 수령으로 인한 궁극적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에게 전가된다는 것, 보험범죄의 피해자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 즉, 국민이라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가기관이 입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이는 잠재적 범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5. 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확대

보험범죄 발생 징후는 범행의 기회를 엿보는 잠재적 범죄자들의 주변인들로부터도 감지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변위협,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험범죄에 대한 제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신고자 등의 신상비밀을 보장하고 충분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 [1] 강맹진·김진철, 현대사회의 범죄, pp. 156-157. 2007.
- [2]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fss/insucop/define02.jsp>
- [3] 강맹진, 「현대사회의 범죄」, 서울: 대왕사, p.158, 2011.
- [4] 시사1번지 폴리뉴스 2015. 4. 4.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31580>
- [5] 조해균, “보험범죄의 현황과 효율적 대처방안”, 보험방지 대책 세미나 자료, 1998.